

## 부속서 IV

### 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뉴질랜드

1. 이 양허표는 제9.2조(적용범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의 일시적 입국에 대하여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따른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2. 이 양허표와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은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의 일시적 입국 또는 일시적 체류에 관련된 뉴질랜드의 약속 전체를 구성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6조(최혜국 대우)에 따른 최혜국 대우 및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른 미래 자유화에 관한 뉴질랜드의 약속은 이 양허표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아래에 규정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노사분쟁의 경우 그리고 또한 선박의 선원과 관련하여 약속 안함을 유지한다.

다음의 범주에 한정하는 입국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함)
<p><b>A. 상용 방문자</b></p> <p><u>정의:</u> 보수와 재정적 지원이 전적으로 뉴질랜드 밖의 소득원으로부터 나오며 다음과 같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일시적 입국을 하고자 하는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p> <p>(i)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협상하고 체결할 목적으로 하되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 자체의 공급에는 종사하지 않는 경우. 또는</p>	<p>한 해 동안 총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입국</p>

<p>(ii) 투자자 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투자자의 대표로서 투자의 설립, 확장, 감독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되 상용 방문자 자체의 사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도가 없는 경우.</p>	
<p><b>B. 기업 내 전근자</b></p>	
<p><u>정의:</u>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p> <p>(i) 뉴질랜드에 상업적 주채를 갖춘 다른 당사자의 상품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 그리고</p> <p>(ii) 급여 및 모든 관련 지급이 그 기업 내 전근자를 고용한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에 의하여 전적으로 지불됨.</p>	<p><u>임원</u></p> <p><u>정의:</u> 주로 기업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기업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 임원은 실제 서비스 공급 또는 기업 운영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음.</p> <p>뉴질랜드로의 전근 신청 전 그 고용인에 의하여 최소 12개월 동안 고용되었던 임원의 경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의 최초 체류를 위한 입국.</p>

다음의 범주에 한정하는 입국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함)
	<p><b>관리자</b></p> <p><u>정의:</u> 주로 기업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이나 지시를 받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 및 통제하며 기업의 운영 전반 또는 상당한 부분에 대한 목표와 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보유하여, 뉴질랜드 내 그 기업의 운영 전반 또는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거나 지휘할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p> <p>뉴질랜드로의 전근 신청 전 그 고용인에 의하여 최소 12개월 동안 고용되었던 관리자의 경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의 최초 체류를 위한 입국.</p> <p><b>전문가</b></p> <p><u>정의:</u> 기술적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을 보유하고 조직의 서비스, 연구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여 조직에서 고도의 무역적, 기술적 또는 전문적 능력을 가진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p> <p>그러한 전문가는 뉴질랜드에서 조직 운영의 특정 부문을 담당하거나 그 부문에 고용되어 있음. 기술은 신청인의 고용 경력, 자격 및 그 직위에 대한 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됨.</p> <p>최대 3년의 기간 동안의 최초 체류를 위한 입국.</p>

<b>C. 설치업자 또는 서비스업자</b>	
<u>정의:</u> 공급 회사에 의한 설치 또는 서비스가 기계류 또는 장비의 구매 조건인 경우 그러한 기계류 또는 장비의 설치업자 또는 서비스업자인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 설치업자 또는 서비스업자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서비스는 수행할 수 없음.	어떠한 12개월의 기간 동안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입국.
<b>D. 독립 서비스 공급자</b>	
<u>정의:</u> 상업적 주재에 대한 요건 없이, 계약에 기초하여 종사하는 자영 서비스 공급자.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뉴질랜드의 양허표에 규정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그리고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의 체류를 위한 입국.

다음의 범주에 한정하는 입국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함)
<p>다음의 범주에 한정함.</p> <p><b>독립적인 전문가:</b></p> <p><u>정의:</u></p> <p>상업적 주재에 대한 요건 없이, 뉴질랜드에서 유효한 계약에 따라 종사하는, 고도의 기술적 또는 전문적 능력을 가진 다른 당사자의 자영 자연인.</p> <p>또한 독립적인 전문가는 다음을 보유하여야 한다.</p> <p>(i) 인정된 학위 또는 졸업증서를 가지게 되는 3년 이상의 정식 고등교육의 결과에 따른 자격요건, 그리고</p> <p>(ii) 6년 이상의 경력.</p> <p>(i) 과 (ii)는 모두 독립적인 전문가가 그들의 전문적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것이어야 함.<sup>1</sup></p>	

<sup>1</sup> 이러한 자격요건은 적절한 뉴질랜드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뉴질랜드법에 따라 그러한 인정이 뉴질랜드 내 그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조건인 경우이다.